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 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102-1996-051782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10-34외 2필지 제4층 제401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2		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10-34, 610-3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-124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14길 54	철근콘크리트조 경사 슬래브지붕 4층 연립주택 1층 490.48㎡ 2층 469.81㎡ 3층 469.81㎡ 4층 469.81㎡ 지층 449.95㎡	도로명주소 2013년5월31일 등기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.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10-34 2.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10-35 3.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-124	대 대 대	342㎡ 402㎡ 574㎡	1995년5월9일
2	1.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10-34 2.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10-35 3.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-124	대 대 대	342㎡ 402㎡ 574㎡	1999년12월2일 1내지3토지 착오발견 1999년12월3일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95년5월9일	제4층 제401호	철근콘크리트조 218.78㎡	도면편철장 1책 233장

(대지권의 표시)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, 2, 3 소유권대지권	1318분의 163	1995년3월11일 대지권 1995년5월9일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2)	소유권이전	1996년4월10일 제18383호	1996년3월25일 매매	소유자 김진세 421129-*****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수곡길 599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근저당권설정	2020년12월23일 제226771호	2020년12월22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110,000,000원 채무자 김진세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수곡길 599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10111-00134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(공평동) (리테일고객지원팀)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‘기록사항 없음’ 으로 표시함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 의 사 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02-1996-051782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10-34외 2필지 제4층 제401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 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김진세 (소유자)	421129-*****	단독소유	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수곡길 599	1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 구)

- 기록사항 없음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 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1	근저당권설정	2020년12월23일 제226771호	채권최고액 금110,000,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	김진세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